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나217336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9.

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9가단1280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이 2016. 8. 7.에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9. 2. 26. 접수 제65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2008. 7. 4.에 확정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1995호 양수금,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판결금 채권(4,855,943원 및 위 돈 중 1,311,235원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채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2/9 지분을 2016. 8. 7. 망 D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E, F, C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이라 한다), 피고가 2019. 2.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지분을 상속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C을 채무자, 주식회사 G, H조합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54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1. 4.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2018. 1. 11. 이 법원 2018타채5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8. 1.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다시 2019. 11. 27. 이 법원 2019타채138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9. 12.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각 발령일 무렵에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포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C이 피고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기 이전에 이미 성립한 채권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선결례의 태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C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을 포기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의 다툼

가)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와 C 등 D의 공동상속인들이 2016. 8. 7.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나) 소결

(1) 피고와 C 등 D의 공동상속인들이 2016. 8. 7.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자발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피고는 위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에 따라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본안전 항변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소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요건사실이므로(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의 취지 참조), 위와 같은 시효소멸 항변은 본안의 항변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8. 7. 4.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다만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인 2011. 4. 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C을 채무자, 주식회사 G, H조합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타채543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1. 4.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다시 2018. 1. 11., 2019. 11. 27.에도 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8. 1. 12. 및 2019. 12. 2.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발령일 무렵에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인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채무자인 C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이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원고의 재항변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수익자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선결례의 태도

(1)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의 취지 참조).

(2)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소결

(1)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명한, 판사 최희동, 판사 안철범

별지

부동산 목록

1. 포천시 I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95㎡
2. 포천시 I 답 314㎡
3. 포천시 J 답 579㎡ 끝.

